

##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

- ◇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### □ 사업개요

- 신청기간 : '24. 2. 26. ~ '25. 2. 25. / 1년간
- 지원기간 : '24. 3. ~ '26. 12.
- 지원대상 : 부모님과 별도거주 중인 19세~34세 무주택 청년
  - (필수요건) 청약통장 가입 필수 \*24년 변경사항
  - 소득재산
    -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총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
    - 청년 독립가구 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,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
  - \* 다음 요건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청년 독립가구로 인정
    - ① 30세 이상, ② 혼인, ③ 미혼부·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(지원제외) 주택소유자,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재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- 지원내용 : 주거 임대료(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)
- 추진근거
  - 「주거기본법」 제15조(주거비 보조)
  - 「청년기본법」 제20조(청년 주거지원)